



ESG

독립적인 감사위원 둘, 상승 모멘텀까진 아니어도 든든한 하방 지지선은 된다

▶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9월 10일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더불어 분리선출하여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상향된다. 국내 상장회사들의 감사위원회 규모가 대개 3명이기 때문에 인원의 3분의 2가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감독·견제 기능이 종전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의 존재는 기업가치의 급락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합산 3% Rule과 분리선임의 결합→독립적 감사위원 2인 선임
2025년 7월 상법 1차 개정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도 합산 3% Rule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고, 2025년 9월 2차 개정으로 분리선임해야 하는 감사위원 수가 확대(1명→2명)되었다. 전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후자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두 제도 중 하나만으로도 대주주가 선호하는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둘이 결합되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예: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한 후보) 2인이 감사위원회에 진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 강화

아직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가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국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명 이상인 기업이 일부 있는 양상이다. 감사위원이 3명인 경우 2명이 표를 결집하면 사실상 위원회 의결을 좌우할 수 있다. 설사 감사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2명이 뜻을 모으면 가부동수(可否同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원안 가결 관행을 끊고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기에 충분하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기업가치

견제·감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감사위원회의 존재는 부실 경영이나 거버넌스·내부통제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한 급격한 기업가치 폭락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기업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법률에 따른
설치 의무와 구성기준

상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다(엄격 감사위원회).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는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되지만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엄격 감사위원회는 이에 더불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반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또는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비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임의 감사위원회)에는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설치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회사가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엄격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데 구성 요건이 상법상 엄격 감사위원회와 거의 유사하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여타 이사회 내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독립이사이면 되지만 감사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표1] 법률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와 구성기준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6조(적용 범위)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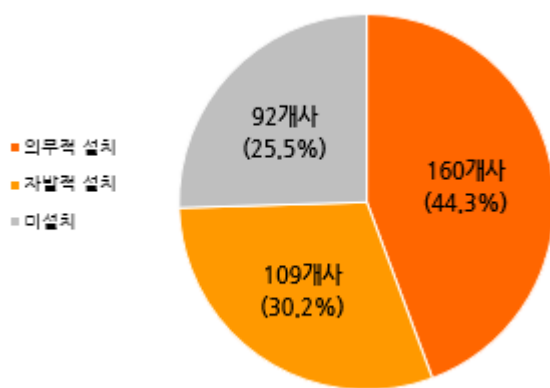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규모

8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상장회사 361개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25년 5월 기준 269개사(74.5%)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중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160개사이고 나머지 109개사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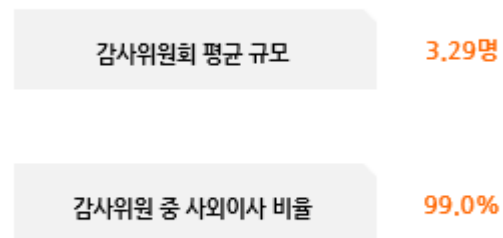
269개사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 수의 총계는 884명인데 이 중 99.0%에 해당하는 875명이 사외이사이다. 884명을 269개사로 단순히 나누었을 때 감사위원회 규모는 약 3.3명이다.

[그림1]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주: 2025년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회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감사위원회 규모 및 사외이사 비율



주: 2025년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269개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합산 3% Rule 과 분리선임의 결합→독립적 감사위원 2인 선임

합산 3% Rule과 분리선임의
결합 →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 2인 선임 확률
높아져 →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 강화

2025년 7월 상법 1차 개정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도 합산 3% Rule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고, 2025년 9월 2차 개정으로 분리선임해야 하는 감사위원 수가 확대(1명→2명)되었다. 전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후자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두 제도 중 하나만으로도 대주주가 선호하는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둘이 결합되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예: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한 후보) 2인이 감사위원회에 진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국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명 이상인 기업이 일부 있는 양상이다. 감사위원이 3명인 경우 2명이 표를 결집하면 사실상 위원회 의결을 좌우할 수 있다. 설사 감사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2명이 뜻을 모으면 가부동수(可否同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원안 가결 관행을 끊고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기에 충분하다.

아직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가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담당하는 전문 분야별로 상정되는 안건을 비판적으로 심의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같이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현실은 이사회 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으킨다. 3인의 감사위원 중 2인 이상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면, 의례적인 가결 관행을 벗어나 종전보다 엄격한 심의와 다각적인 검토, 적극적인 자료 요구 등 감사위원회 회의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표2] 국내 주요 상장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가결 현황

(단위: 건)

구분	안건	원안 가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부결	조건부가결	보류	수정가결	소계
감사위원회	1,809	1,800	3	0	2	4	9
추천위원회	394	393	0	0	0	1	1
보상위원회	532	528	1	0	2	1	4
내부거래위원회	1,049	1,048	0	0	1	0	1
ESG위원회	455	452	0	0	1	2	3
계	4,239	4,221	4	0	6	8	18
	100%	99.6%	0.1%	-	0.1%	0.2%	0.4%

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회사, 조사 대상 기간은 2024.5.15.~2025.5.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합산 3% Rule 적용 범위 확대의 효과

종전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에는 개별 3% Rule과 합산 3% Rule이 모두 적용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에는 개별 3% Rule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7월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Rule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이 정비되었다.

개별 3% Rule만 적용되는 상황 하에서는 다수의 계열회사를 동원해 3% 내외로 지분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으로 3% Rule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다음 페이지 S사 사례 참고).

(소액)주주를 대신해 이사회와 대주주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인데 국내 기업은 대주주가 사내이사까지 겸임하거나 이사회가 대주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마저 대주주가 선호하는 자인 경우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주주와 사적으로 친하거나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3% Rule을 도입한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3% Rule만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한 합산 3% Rule의 적용 범위 확대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게 된 셈이다.

[표3] 합산 3% Rule 개정 전후 (개정 2025.7.22, 시행 2026.7.23)

개정 전	개정 후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기업 사례)
개별 3% Rule의 맹점을
이용했던 S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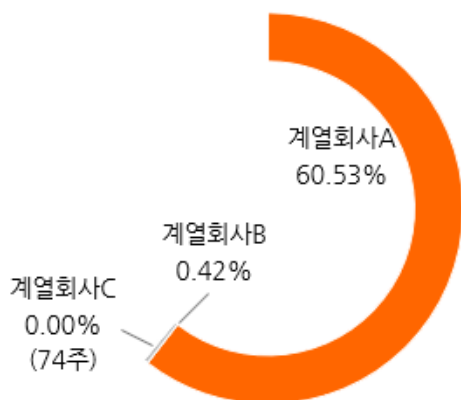
2022년 S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 주주 추천 감사위원은 임기동안 이사회에 상정된 다수의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주주환원 강화를 요구했다. 심지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반대하는 안건에 혼자 찬성 표를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이사회와 대주주 측이 추천한 사람들이었고 이사회 규모도 큰 편이었기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의 고군분투만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다.

심지어 S사의 계열회사들은 2022년 정기주총 이후 S사의 지분을 분산하여 소유하기 시작했다. 대주주 측의 우호 세력이 지분을 분산 소유하게 되면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개별 3% Rule이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말에는 계열회사 3개가 S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대주주인 계열회사 A의 지분율은 60%에 달했으나 나머지 계열회사 B와 C의 지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4년 말에는 계열회사 A의 지분율은 여전히 약 60%였지만 다른 계열회사 6개가 S사의 지분을 소량씩 분산 소유하는 주주 구성으로 변했다. 지분을 분산 소유한 계열회사 6개 중 5개사는 지분율 3% 내외, 1개사는 1% 내외로, 각 계열회사가 특정 감사위원 선임에 찬성표를 행사하면 개별 3% Rule 하에서도 발행주식총수의 약 19%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결집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S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았기에 계열회사 간 출자가 자유로웠다.

상기 주주 추천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었는데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연대가 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을 하지 않았고,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선임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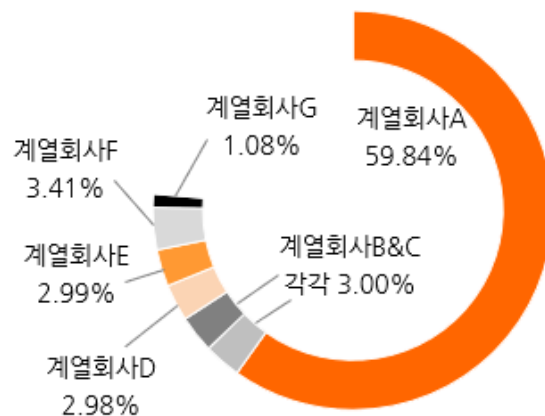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2026년 7월부터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게도 합산 3% Rule이 적용되지만, 2025년 3월 당시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개별 3% Rule만 적용되었다.

[그림3] 2022년 정기주주총회 당시 S사 주주 구성



자료: S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2024년 말 S사 주주 구성



자료: S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Rule의 무력화를 초래했던 일괄선출 방식

감사위원 일괄선출 방식이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다시 새로운 결의로 감사위원이 되는 자를 선임하는 방식을 말하며, 분리선출 방식이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와 감사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애초부터 분리하여 선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자는 두 단계에 걸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한 번에 선임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일괄선출 방식 하에서는 두번째 단계에서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해도 그 전 단계인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다. 이미 대주주가 원하는 자들로 추려진 후보군 내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므로 3% Rule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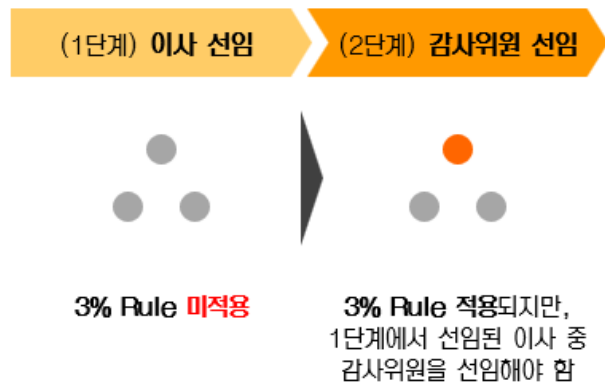
이를 보완하고자 2020년 12월에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였고, 2025년 9월 개정을 통해 이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 수를 2명으로 상향하였다.

[표4] 분리선임 개정 전후 (개정 2025.9.9, 시행 2026.9.10)

개정 전	개정 후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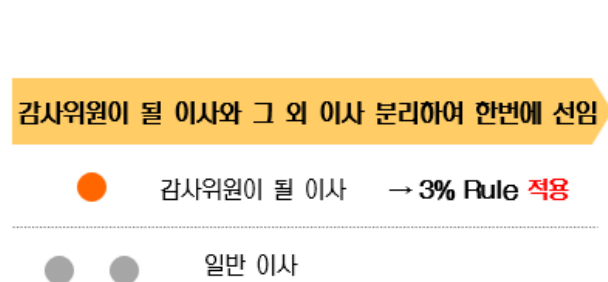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감사위원 일괄선출 방식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인의 독립적 감사위원, 든든한 하방 지지선으로 기능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회계·재무감사와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이다. 이에 더해 외부 감사인 선·해임, 내부통제 감독, 경영진 및 이사의 위법·부정행위 조사, 경영진 및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수행한다.

상법상 결격사유 등을 통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관리하고 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지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3% Rule도 예전부터 적용되어 왔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주주가 선호하는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길이 완벽하게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올해 7월 23일부터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합산 3% Rule이 적용되고, 9월 10일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의 수가 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여야 회계·재무감사, 이사 직무집행 감독, 부정 조사 등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기업가치

감사위원회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외 진출 전략을 구상하는 등 기업의 실적을 능동적으로 성장시키거나 수익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 2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단기간에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견제·감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감사위원회의 존재는 부실 경영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한 급격한 기업가치 폭락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5]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기업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예시

- 계열회사 부당 지원, 계열회사에게만 유리한 내부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Tunneling)을 막음
- 분식회계, 자금 횡령, 뇌물 수수, 인사 청탁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 가능 강화로 거버넌스나 내부통제 관련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기업가치 급락 방지
- 무리한 투자, 핵심자산 임의 매각, 거액의 차입, 과도한 보수 수령, 독단적인 인사 등 대표이사 및 주요 사내이사의 전횡을 상시적으로 감독함으로써 기업가치 훼손 예방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